

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수렴(안 제4조)
- 문학진흥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)
-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,
 - 안 제4조에서는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,
 - 안 제5조에서는 문학진흥 지원 근거마련을,
 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 문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
 - 안 제11조에서는 등록문학관 지원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 제정조례안은 문학진흥 기본계획 수립, 문학진흥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, 학술활동 및 전문인력양성과 교육 지원, 국제교류 촉진 지원, 그리고 문학관등록심의 등을 위한 문학진흥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. 끝.